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7
----------	-----

2019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가. 제안이유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는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써 펀드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 필요성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은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무로서 그동안 녹색펀드(3호)를 운용한 (재)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녹색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 추진현황

- 1차 위탁관리 : 2013.08.01.~2016.07.31.(3년, 서울산업진흥원)
- 2차 위탁관리 : 2016.08.01.~2019.07.31.(3년, 서울산업진흥원)

### 2) 위탁 주요내용

#### ○ 위탁 사무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

#### ○ 위탁기간 : 2019. 8. 1 ~ 2022. 7.31.(3년)

####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 위탁사무 : 서울시 출자금(20억원) 운용 관리

- 펀드 현황관리, 펀드 출자금 및 배당 수익관리
- 기타 펀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무

####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적정(71점)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 적정(81점)

## ※ 펀드 개요

- 펀드명칭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
- 조성일 : 2013. 9. 16
- 조성규모 : 총 200억원
  - 서울시(20억원, 출자비율 10%), 중기청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180억원)
- 운용기간 : 8년(3년 투자, 5년 회수)
  - 투자기간 : 2013. 8. 1. ~ 2016. 7.31(3년)
  - 회수기간 : 2016. 8. 1. ~ 2021. 7.31(5년)
- 투자대상 :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녹색기업
- 투자조합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 메디치인베스트먼트, 한국증권금융, 서울시, 신한캐피탈, 한국모태펀드
- 투자집행 : 20개사, 207억원
  - 녹색기업 3개사(45억원), IT 및 기타 17개사(162억원)
- 회수금액 : 103.9억원('19.3월 기준)
  - 서울시 분배금액(10%) : 10.39억원(원금 9.29억원, 수익 1.10억원)

##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제20조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 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없음

※ '13년 계약시 펀드운용관리(3년투자, 5년회수)에 대한 위탁수수료(투자금액의 1%, 2,000만원)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지급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현황 1부.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가.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에 대해 펀드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녹색기업 창업펀드 현황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1호~제3호)는 사업초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녹색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출연금<sup>1)</sup>,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자 등의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현재 서울산업진흥원(SBA)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제1호 및 제2호 녹색기업 창업펀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출연금 형태로 구성되어 출연금이나 펀드운용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귀속주체가 SBA이므로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지 않았음.
- 그러나 2013년부터는 펀드(제3호)의 조성방식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직접출자방식<sup>2)</sup>으로 변경되면서 출자금 및 운용수익의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

귀속주체가 서울시로 변경되었고 출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관리·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이며,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가 이에 해당됨.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는 총 200억원<sup>3)</sup> 규모로 조성되어 20개사<sup>4)</sup>에 207.1억원이 투자집행 되었고 펀드 운용기간은 8년(3년 투자, 5년 회수)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며, 2019년 3월 기준 회수금액은 103.9억원<sup>5)</sup>임.

동 펀드는 SBA에서 2013년 8월 1일 이후 2차에 걸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차 위탁관리 기간은 2019년 7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2) 서울시 출자 20억원 운용 현황

- 동 펀드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2013년)」에는 서울시 출자금 20억원의 2배 이상을 녹색기업에 투자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투자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5억원<sup>6)</sup>(3개 업체)을 녹색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약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2016년 종합성과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반영<sup>7)</sup>된 결과이고 투자기간 초기에는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

---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3) 서울시 20억원(출자비율 10%), 중기청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180억원

4) 녹색기업 3개사(45억원), IT 및 기타 17개사(162억원)

5) 서울시 분배금액(회수금액의 10%) : 10.39억원(원금 9.29억원 + 수익 1.1억원)

6) ‘2016년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 녹색펀드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녹색창업 기업 비중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었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지도점검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고, 2016년 평가 당시 개선요청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건은 부분완료, 1건은 미완료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기간이 종료되어 큰 의미는 없음.

다만, 서울시 출자금액 20억원을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개선요청사항〉

- 2016년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수탁기관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미흡함
  - 녹색펀드운용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녹색창업 기업 비중이 약정(서울시 투자금 20억의 2배수인 40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사와의 업무 협의 필요(완료)
  -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운영사 주관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펀드운용사의 적정한 투자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프로세스 관리가 미흡하여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부분완료)
  - 펀드조성 및 운용관리측면에 부합하는 기업투자센터와 관련한 사업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제고 방안 추진 미흡(미완료)

### 3) 민간위탁 타당성 및 재계약 검토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를 1~2차에 걸쳐 운용·관리하고 있는 SBA와 재계약하여 3차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서울시 출자금 20억원을 운용·관리<sup>8)</sup>하는 것이며, 재계약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sup>9)</sup>는 필요 없음.

7) '16년 종합성과평가 지적 이후 10억원을 (주)위델소재에 투자('16.7월)하여 40억원 이상의 약정 만족

8) 펀드 현황 관리, 펀드 출자금 및 배당수익 관리, 기타 펀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무 등

9) '13년 계약시 펀드운용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 20백만원(투자 금액의 1%)을 SBA에 지급했기 때문에 재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동 펀드는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녹색 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형태로 운용되므로 전문 펀드운용사의 선정, 녹색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녹색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동 펀드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 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또한,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제1호, 제2호)를 운용·관리하고 있고 동 펀드 (제3호) 운영 사무를 지난 6년간 2차에 걸쳐 수탁하고 있는 SBA에 재계약 하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sup>10)</sup>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0)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적정**(71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 **적정**(81점)



## [참고자료]

### ○ 투자현황 : 20개사, 207.1억원 투자집행

년도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억원)	내 용	비고
계		207.1	-	-
13년	(주)테크로스	3.4	선박평형수 오염 정화장치의 높은 기술력 및 시장 성장성	
	(주)메디파마플랜	10.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액 포장재 제조사, 중국 진출	
	세일전자(주)	10	FPCB(플렉시블 인쇄배선회로용 기판)의 높은 시장 성장성	
	(주)민앤지	5.5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춘 서비스 개발	
14년	(주)메디젠휴먼케어	7.5	업계 선도적인 유전체 분석 질병예측 서비스업체에 대한 투자	
	(주)나노브릭	15	미국 회사가 독점중인 소재산업의 국산화	
	(주)시지트로닉스	15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품질	
	(주)레이드몹	5	스마트폰 이용 일반게이머의 니즈를 충족하는 모바일게임 개발	
15년	(주)지2터치	7.5	터치기술의 독보성 방식으로 1-layer 터치센서 구현 가능	
	(주)그램퍼스	5	향후 빙고어드벤처 캐나다 및 북미시장 론칭후, 본격적인 매출 예상(모바일게임 개발)	
	(주)에치디프로	25	기존 인프라 교체가 필요없는 HD급 아날로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CCTV 제조)	
	(주)코어크리에이티브	2	RPG 게임 개발사로서 기존 RPG에 길드전과 아이템 거래를 추가	
	(주)클래스타임	1	피트니스 기반의 O2O 플랫폼 개발기업으로서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피트니스 수업 편의성 제공	
	(주)오엠피	7.5	초등교육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학원전문 어플 개발기업	
	(주)옴니씨앤에스	10	헬스케어 산업과 IoT기술 시장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기업	녹색기업 (15.12월)
16년	아이디피(주)	25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아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 ID카드 프린터기 시장 대체	녹색기업 (16.4월)
	(주)아크릴	5	감성인식 및 빅데이터 관련 특허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솔루션 개발 가능	
	(주)위델소재	10	OLED 유기소재, 화장품 유기원료	녹색기업 (16.7월)
	(주)에이씨엔	12.5	반도체 장비 및 탄소섬유 장비 제조	
	대보건설(주)	25	국내외 토목 건축 공사 및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7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는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써
- 나. 펀드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 필요성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은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무로서,
- 그동안 녹색펀드(3호)를 운용한 (재)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추진현황

- 1차 위탁관리 : 2013.08.01.~2016.07.31.(3년, 서울산업진흥원)
- 2차 위탁관리 : 2016.08.01.~2019.07.31.(3년, 서울산업진흥원)

##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 사무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2019. 8. 1 ~ 2022. 7.31.(3년)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위탁사무 : 서울시 출자금(20억원) 운용 관리
  - 펀드 현황관리, 펀드 출자금 및 배당 수익관리
  - 기타 펀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적정(71점)
  -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 적정(81점)

###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운용 개요 〉

- 펀드명칭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 조성규모 : 총 200억원
  - 서울시(20억원, 출자비율 10%), 중기청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180억원)
  - ※ 서울시 출자한 20억원은 '녹색기업 창업펀드'로 운영
- 조 성 일 : 2013. 9. 16
- 운용기간 : 8년(3년 투자, 5년 회수)
  - 투자기간 : 2013. 8. 1. ~ 2016. 7.31(3년)
  - 회수기간 : 2016. 8. 1. ~ 2021. 7.31(5년)
- 투자대상 :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녹색기업
- 투자조합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 메디치인베스트먼트, 한국증권금융, 서울시, 신한캐피탈, 한국모태펀드
- 투자집행 : 20개사, 207억원
  - 녹색기업 3개사(45억원), IT 및 기타 17개사(162억원)
- 회수금액 : 103.9억원('19.3월 기준)
  - 서울시 분배금액(10%) : 10.39억원(원금 9.29억원, 수익 1.10억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제20조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2.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녹색산업 집적화 거점 조성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없음

※ `13년 계약시 펀드운용관리(3년투자, 5년회수)에 대한 위탁수수료(투자 금액의 1%, 2,000만원)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지급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현황 1부.

※ 작성자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이병옥 (☎2133-3554)

**【첨부】**

# 녹색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 펀드명칭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 결성금액 : 200억원
- 결성일(존속기간) : '13. 9.16(8년/3년투자,5년회수)
- 업무집행조합원 : (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
- 조합원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억원)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	25	12.5%
유한책임조합원	한국증권금융	70	35.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산전출 출자)	20	10.0%
	신한캐피탈	5	2.5%
	소 계	95	47.5%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80	40.0%
계		200	100.0%

○ 투자집행 및 회수내역

(’19.3월 기준)

투자기업 및 투자액			회수 금액 (억원)	서울시 분배금액 (억원)		
계	녹색기업	IT및기타		원금	수익	계
20개사	3개사	17개사	103.9	9.29	1.10	10.39
207.1억원	45억원	162.1억원				

○ 투자현황 : 20개사, 207.1억원 투자집행

년도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억원)	내 용	비고
계		207.1	-	-
13년	㈜테크로스	3.4	선박평형수 오염 정화장치의 높은 기술력 및 시장 성장성	
	㈜메디파마플랜	10.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액 포장재 제조사, 중국 진출	
	세일전자㈜	10	FPCB(플렉시블 인쇄배선회로용 기판)의 높은 시장 성장성	
	㈜민앤지	5.5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춘 서비스 개발	
14년	㈜메디젠휴먼케어	7.5	업계 선도적인 유전체 분석 질병예측 서비스업체에 대한 투자	
	㈜나노브릭	15	미국 회사가 독점중인 소재산업의 국산화	
	㈜시지트로닉스	15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품질	
	㈜레이드몹	5	스마트폰 이용 일반게이머의 니즈를 충족하는 모바일게임 개발	
15년	㈜지2터치	7.5	터치기술의 독보성 방식으로 1-layer 터치센서 구현 가능	
	㈜그램퍼스	5	향후 빙고어드벤처 캐나다 및 북미시장 론칭후, 본격적인 매출 예상 (모바일게임 개발)	
	㈜에치디프로	25	기존 인프라 교체가 필요없는 HD급 아날로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 (CCTV 제조)	
	㈜코어크리에이티브	2	RPG 게임 개발사로서 기존 RPG에 길드전과 아이템 거래를 추가	
	㈜클래스타임	1	피트니스 기반의 O2O 플랫폼 개발기업으로서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피트니스 수업 편의성 제공	
	㈜오엠피	7.5	초등교육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학원전문 어플개발기업	
	㈜옴니씨앤에스	10	헬스케어 산업과 IoT기술 시장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기업	녹색기업
16년	아이디피(주)	25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아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 ID카드 프린터기 시장 대체	녹색기업
	㈜아크릴	5	감성인식 및 빅데이터 관련 특허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솔루션 개발 가능	
	㈜위델소재	10	OLED 유기소재, 화장품 유기원료	녹색기업
	㈜에이씨엔	12.5	반도체 장비 및 탄소섬유 장비 제조	
	대보건설(주)	25	국내외 토목 건축 공사 및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	